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0월 2일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업경영과장 백순규)

가. 제안이유

-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폐지와 농지법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,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임차료 상한규정 삭제
- 농지이용실태조사등 농지이용행위 조사사항 삽입
- 농지관리위원 추천방법 개정 세부기준 명시사항
-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- 1999.3.31일 법률제5948호로 농지법 제24조(임차료기간)및 제25조(임차료상한)규정이 삭제되면서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법개정과정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기능(안제4조)을 정비코자 하며,
- 현행 조례상 농지관리위원 추천은 군수의 추천요청에 따라 이장이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1인을 추천,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리의 자율권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자 위원회 추천방법에 있어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리의 자율권을 보장하고,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부